

정보산업관련 법령정비 현황

– 93년 정기국회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신 각 철 (법제처 법제연구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정보산업 관련 법령이 대거 개정됐다.
올해 공포된 관련법령들은 어떻게 개정됐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필자 소속기관과 무관한 개인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법령정비의 필요성

올해 정부는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삼고, 신경제5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과학기술정책의 추진과 함께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늘리고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94. 1. 6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참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효율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기반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한편,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에서 까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보편화되어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고, 자유로운 통신의 비밀이 확보되지 않는 등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 늘어가고 있다.

이에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정보통신의 비밀보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요구되었다.

또한 최근에 UR협상의 타결과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등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각국과 차별없이 국내상품이 국제거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게 되었다.

93년도 12월 제165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주요 정보산업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유출로 인한 개인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입법이 있었고, 지적재산권분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

물로서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 특허제도의 국제화수준에 맞추기 위한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등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들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

법제정의 목적(제1조)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였다.

용어의 정의(제2조)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공기관」과 「개인정보」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우선 이 법률의 적용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이 해당되며, 민간부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하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정부 각부처와 그 소속기관이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직할시·도, 시·군, 구, 동과 이와 관련된 소속기관이 해당된다.

그 밖에 공공단체로서 개인정보취급이 예상되는 중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주요 정부투자기관 등이 해당될 것이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제4조~제11조)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이 제한되며,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총무처장관은 매년 1회이상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의 장은 파일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누설,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하며 보유 목적이외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제12조~제15조)

정보주체인 각 개인은 자기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 학교의 성적, 채용시험평가자료, 감사자료, 의료기록등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제22조)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만을 보호하게 되었으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기업 등 단체에서도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에서도 이 법률의 적용을 직접 받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처벌규정(제23조~)

①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 : 10년이하의 징역

② 개인정보의 누설, 타인이용 제공자 또는 부당목적으로 사용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프로그램 창작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① 업무상 창작프로그램에 있어서 「공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미공표프로그램도 보호받고 사용자와 종업원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제7조).

② 판매용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대여권」을 신설하였다(제16조의2).

③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컴퓨터에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아 처벌된다(제26조).

④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을 분쟁조정이외도 정책사항, 기술적사항 등으로 강화하였다(종전에는 심의기능만을 갖는 「프로그램심의위원회」였으나, 분쟁조정기능을 두었음).

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이번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직무상비밀누설자의 경우도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강화하였고, 등록 또는 복제물제출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해서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신규제정)

제정목적

이 법률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도록 제정하였다.

용어정의

이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기통신」과 「감청」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기통신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정의는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과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호)과 동일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통신사업자, 특정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감청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정의에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내용을 청취하거나 지득할 경우」감청에 해당되며, 이 법에 위반된다.

이 법에서 예외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요건은 ① 폭발물검사 및 환부우편물의 처리 ② 수출입우편물의 검사 ③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의 통신 ④ 파산자에 대한 통신 ⑤ 혼신

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등이 있다.

감청자의 처벌

이 법률에 위반하여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저작권법등 관련법령의 개정

그 밖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고,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하여 유선방송중자가유선방송의 허가제를 폐지하였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회계사무분야에서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회계경리의 서식」에 관하여 대폭적으로 전산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기타 정보화관련 법령정비 현황

기타 지난해 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정보화관련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칭	공포일(공포번호)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	1994. 1. 7공포 (법률 제4734호) 시행 : 1995. 1. 7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서 개인정보를 컴퓨터처리할 경우 사전통보와 공고, 개인에게 자기정보의 열람권, 정정청구권을 제공함. - 처리정보에 대한 이용, 제공등의 제한으로 개인의 사생활비밀을 보호함.
• 종합유선방송법 (개정)	1994. 1. 7공포 (법률 제4737호) 시행 : 1994. 3. 1	-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은 일정한 자의 참여자격을 제한하여 매체독점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프로그램공급업체에 외국인의 투자허용함.

법령명칭	공포일(공포번호)	주요내용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	1994. 1. 5 공포 (법률 제4712호) 시행 : 공포후 6월	-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프로그램 저자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대여권 신설) - 불법복제물 알면 업무상 사용자도 저작권 침해 됨. - 벌칙을 종전 3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 저작권법(개정)	1994. 1. 7 공포 (법률 제4717호) 시행 : 1994. 7. 1	- 편집저작물이란 논문, 수치, 도형 기타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즉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명문화함.
• 통신비밀보호법 (신규제정)	1993. 12. 27 공포 (법률 제4650호) 시행 : 공포후 6월	- 통신 및 대화비밀 보호와 통신의 자유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규정함.
• 유선방송관리법 (개정)	1993. 12. 31 공포 (법률 제4694호) 시행 : 1994. 1. 1	- 자가유선방송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유선방송사업자의 불편을 제거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음.
• 외국간행물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	1993. 12. 31 공포 (법률 제4688호) 시행 : 1994. 1. 1	-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문자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등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라고 용어정의함으로 외국간행물에 포함.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규제정)	1993. 12. 31 공포 (대통령령 제14043호)	- 물품목록정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규정을 둠.
• 회계경리의 서식에 관한규칙(개정)	1993. 12. 15 공포 (재무부령 제1951호)	- 「장부 및 문서의 전산작성」을 위하여 동규칙을 개정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서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기업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회계에 필요한 모든 장부와 보고서의 서식을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